

의안번호	2115175
의 퇴 인	구자근 의원
회 답 일	2022 4.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 여론조사(안 제8조의8)

-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규정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어려움

- 현재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된 독립기구임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언론보도 수집, 모니터링 결과 분석, 여론조사결과 허위·조작 단속 등 관련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1)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인 증가량 예측이 어려워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어려움

-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항²⁾에 따른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실시 횟수 등 현황 파악이 불가하며, 기존의 선거여론조사에는 국정수행조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 예측이 어려움
-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765건의 선거여론조사가 신고되었으며, 총 1,385건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등록·공표됨
-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8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임준기
추계세제분석관	여은구
연락처	02-6788-4673
	cecil@nabo.go.kr
